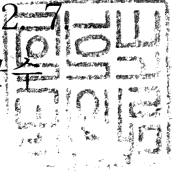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9
----------	------

제출일자 : 2023. 2. 7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 및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른 제명 수정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수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3조제1항)

다. 달성남부도서관 명칭과 위치 신설(안 제2조, 별표1)

라. 별표1 신설에 따른 별표1~2 조정(안 제12조제4항, 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마.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 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함
(안 제23조제5항)

바. 현재 시행중인 법규명칭 반영(안 제3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9조, 제33조~제34조(※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참조
- (2) 입법예고(2022. 12. 26. ~ 2023. 1. 16.)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제4항 중 “별표1과”를 “별표2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을 “별표3과 같이 비용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표2 및 별표3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 ----- ----- -----.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5-2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부속시설물의 사용) ① ~ ③ (생략) 1. ~ 4. (생략)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부속시설물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별표2와 ----.

제1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u>별표1</u> 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사용료) ① ----- ----- ----- <u>별표2</u> ----- ----- ----- -----.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생략) 1. ~ 2. (생략)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u>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u>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u>별표3과 같이 비용을</u>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u>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u>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업무담당</u> 이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u>도서관법</u> 」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도서관 업무팀장</u> 이 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신설>

[별표1]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제36조(준용규정)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별표1] 군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죽곡리)	
달성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중리)	

[별표2]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제14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2] 사용료 기준표(제15조 관련)			[별표3] 복사 등 비용 기준표(제1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구 분	사용료	비 고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별표1】

군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죽곡리)	
달성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중리)	

【별표2】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제14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 · 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3】

복사 등 비용 기준표(제1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